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633 |
|----------|-----|

2021. 1. 28.(목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황 규 철 의원 등 8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1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월 21일

-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황규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, 「지방행정체제 ·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수정 ·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조)
- 제명 띄어쓰기 및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)
-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, 안 제9조, 별표 1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정진설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, 「지방행정체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현행 조례 제5조, 제9조 및 별표 1은 상위법령의 조문번호와 법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제명 띄어쓰기 및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, 제2조제2항 중 “「하천법시행령」”을 “「하천법 시행령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20에 해당하는 금액”을 “120”으로 제명 띄어쓰기 및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.
 - 제5조제3항 전단 중 “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”을

“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4항”으로, 같은 조 제6항 중 “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”을 “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”로, 제9조 중 “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”을 “것 외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”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.

- 별표 1 제4호의 산정기준란 비고 제2호 본문 중“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”을 “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”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.

○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특이사항 없음”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제명 띄어쓰기 및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 를 “필요” 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「하천법시행령」 ” 을 “「하천법 시행령」 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20에 해당하는 금액” 을 “120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전단 중 “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” 을 “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4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” 을 “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” 로 한다.

제9조 중 “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” 을 “것 외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” 로 한다.

별표 1 제4호의 산정기준란 비고 제2호 본문 중 “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” 을 “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6개월씩 균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매년 1월과 7월에 납부한다.

④·⑤ (생략)

⑥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징수의 절차에 따른다.

제9조(준용) 요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-----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4항 -----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-----

제9조(준용) -----

----- 것 외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-----

관계법령

□ 하천법 시행령

제57조(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)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(이하 “하천수사용료“라 한다)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. <이하 생략>

□ 국유재산법 시행령

제30조(사용료의 납부시기 등) ① ~ ③ <생략>

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“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. <이하 생략>

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

제3조(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·평가 및 공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, 그 밖의 자연적·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(이하 “표준지공시지가“라 한다)을 조사·평가하고,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<이하 생략>